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건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825

발의연월일: 2024. 8. 14.

발 의 자 : 윤건영 • 박지원 • 이기헌

전현희 • 문정복 • 한병도

백승아 • 염태영 • 김병기

문진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기관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이 교란·마비 또는 파괴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, 수사기관 또는 인터넷진흥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그러나 통지를 받은 관계기관등은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장치가 없는 등 관리 및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

이에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사고를 통지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조치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조치한 후 처음으로 집회하는 임시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

(안 제13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2(국회에 대한 보고) 관계기관등의 장은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조치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한 후 처음으로 집회하는 임시 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3조의2(국회에 대한 보고) 관
	계기관등의 장은 제13조제1항
	후단에 따른 조치 현황에 관한
	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	바에 따라 조치한 후 처음으로
	집회하는 임시 국회의 개회 전
	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
	보고하여야 한다.